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운영규정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 제.개정이력관리 ◆

VER	제.개정내용/취지	제.개정일	시행일	부서명	작성자
01	신규 제정	20.08	20.08	준법경영팀	이유리
02	개정	21.08	21.08	준법경영팀	변소영
03	사명 변경	21.11	21.11	준법경영팀	이유리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CP 운영규정")은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범위)

"CP 운영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란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 요소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법, 약관 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동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 법규를 의미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
6. "주관부서"란 CP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준법경영팀을 의미한다.
7. "리스크 유관부서"란 주 업무유형 및 특성상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8. "임직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한다.
9.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 4 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1.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기능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준수가 기업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 임을 보장한다.
2.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으로 자율준수 활동이 이행, 개발, 유지 및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최고경영자는 CP 위반행위와 자율준수 문화 저해 행위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4.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자율준수 활동에 대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1. 최고경영자는 사내 CP 정책에 대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2.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3.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 역할과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적절하게 부여한다.

###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1. 회사는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인사부서에서 임시로 지정한 임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수립
4.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교육 관리
5.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

####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권한
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제 9 조 (주관부서의 업무수행)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
2. CP 운영 사항에 대한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3. CP 운영 및 협조사항 홍보
4. CP 운영 제반 문서 관리
5.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 정비
6.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 및 임직원 전달
7. 내부감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8.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
9. 기타 CP 운영 실무

#### 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회사의 지침 및 법무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정거래법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 11 조 (회사의 지원)

회사는 CP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 3 장 CP의 운영

### 제 12 조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1.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3. 전항의 문서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 13 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리스크 유관부서의 임직원들에게는 편람 숙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및 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리스크 유관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5 조 (모니터링)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CP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내부제보시스템)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 부서에게 이를 제보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 4 장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제 17 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준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제보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임직원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검토하여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고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계 없이,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의 제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심의 및 결정하고 제재조치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의 또는 경고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임의로 지연 또는 태만히 하거나, 상당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실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임의로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마.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 ② 견책 이상의 징계

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된 경우

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된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마.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한 경우

바. 기타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조 제1항의 제재 기준은 법 위반에 대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법 위반행위자의 회사 기여도,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크기, 법 위반 후의 반성태도, 법 위반에 대한 정황, 법 위반 행위 관련 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의한 법 위반 행위의 제재 기준은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관련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은 회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19 조 (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